

# 2023년 기윤실 회원총회 회의록

1. 일시: 2023년 2월 7일(화) 18:00~21:15

2. 장소 : 남대문교회

3. 재적 및 출석

• 임원 : 재적인원 32명 중 참석 13명, 위임 14명 (총 27명)

- 참석 : 권혁률, 김홍섭, 박제우, 백종국, 송인수, 왕보현, 유해신, 이병주, 이의용, 정병오, 조성돈, 조주희,

조흥식

- 위임 : 강석창, 권장희, 김정태, 김종구, 방선기, 배종석, 손은실, 송태근, 이문식, 임성빈, 장동민, 정현구,

조수진, 지용근

• 회원 : 재적인원 662명 중 참석 33명, 위임 356명 (총 389명)

• 비회원 배석 : 13명

■ 의장(사회자): 백종국 이사장

■ 안건: 2022년 사업 및 결산 보고, 2023년 사업 및 예산 계획, 임원 개선, 정관 개정

#### [총회 개회]

- ▶ 백종국 의장이 정관 1절 10조¹)에 의거 임원 및 회원 점명을 하고, 임원 재적 32명 중 13명 참석, 14명 위임(총 27명), 회원 재적 662명 중 33명 참석, 356명 위임(총 389명)하여 정관 13조²)에 의거, 2023년 기윤실 회원총회 개회를 선포하다.
- 김현아 사무국장이 찬성, 반대, 질문 등 의사표시 방법을 안내하다.
- 백종국 의장이 회순 및 전 회의록 채택은 온라인 사전검토로 갈음함을 안내하다.

## [2022년 사업 · 결산 · 감사(회계/업무) 보고]

- 김현아 사무국장이 2022년 사업 · 결산 · 회계/업무감사 내용을 보고하다.
- 백종국 의장이 2022년 사업·결산·회계/업무감사 보고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고,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다.
- 백종국 의장이 2022년 사업 · 결산 · 회계/업무감사 보고에 대해 채택 여부를 묻다.
- ▶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하다.

### [임원 개선]

- 백종국 의장이 사임 · 연임 임원 대상자를 소개하다.
  - ① 사임: 김경수(법무법인 율촌 변호사), 지용근(지앤컴리서치 대표),

<sup>1) 1</sup>절 10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과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.

<sup>2) 1</sup>절 13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연임 : 이사 강석창(미네랄바이오 회장), 감사 이병주(변호사, 기독법률가회 대표)
- 백종국 의장이 임원 개선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다.
- ▶ 만장일치로 찬성하다.

#### [2023년 사업 · 예산계획 보고]

- 정병오 공동대표가 2023년 사업 계획을 보고하다.
- 김현아 사무국장이 2023년 예산 계획을 보고하다.
- 백종국 의장이 2023년 사업 · 예산 계획에 대해 질문을 요청하다.
- 손봉호 자문위원장이 환경문제는 정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절약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다.
- 김현아 사무국장이 앞선 사업 계획 보고에서는 새로 시작한 사업을 주로 다루어서 관련된 언급 이 없었으나 현재 자발적불편운동과 연대활동(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)에서 환경 기후문제를 다 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과 절약에 관한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하다.
- 백종국 의장이 사업 · 예산계획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다.
- ▶ 만장일치로 승인하다.

#### [안건 1: 정관 개정안]

- 김현아 사무국장이 정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.
  - [정관] 제1절 총회 12조(의결)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#### 현행 정관 조항

- ▲ 기윤실 정관 제10조(구성) "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, 본회 <u>임원</u>과 본회의 <u>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."</u>
- ▲ 기윤실 정관 제13조(정족수) "총회는 재적**회원 <u>과반수</u>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"**
- ▲ 정관 제5조(회원의 자격)은 "본회의 **회원**은 본회가 정한 사명에 동의하여 **입회원서를 제출한 자**로 한다.
- 1) 정관 제13조의 총회 의사정족수인 '재적<u>회원</u>'에 정관 제10조의 총회 구성원인 '본회 <u>임원'</u>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, 그리고 총회 구성원인 회원은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 되는데, 총회 정족수는 그보다 많은 <u>재적(전체) 회원으로</u> 규정되어 있어서 '총회의 구성원'과 '총회 결의 정족수의 기준'이 서로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음.
- 2) 정관 제13조의 총회 의사정족수는 현재 <u>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</u> 되어 있는데, 회원이 입회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총회 통지 및 출석 및 위임 의사를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와 회원에게 총회 통지를 하였으나 출석 및 위임에 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재적 회원의 과반에 달해 총회 개최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음.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총회의 성회요건인 의사정족수를 법인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.



#### 정관 개정안

- ▲ 기윤실 정관 제10조(구성) "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,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."
- ▲ 기윤실 정관 제 13조(정족수) "총회는 **재적회원 중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 3분 의 1**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"
- 백종국 의장이 정관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고,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다.
- 백종국 의장이 정관 개정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다.
- ▶ 만장일치로 찬성하다.

## [기타건의]

• 백종국 의장이 기타건의 사항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고,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다.

#### [폐회]

- 백종국 의장이 폐회 여부를 묻다.
- ▶ 만장일치로 폐회에 동의하다.
- 2023년 회원총회를 마치다.

(끝)